

I

사업 개요

□ 목 적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

□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에너지 절감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25%, 지방비 30%, 자부담 45%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1. 사업대상자

- (에너지절감시설)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하고,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인 경우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별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공통사항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지원제외)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 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와 해당 온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우선지원)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통사항	○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 (가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중복적용 가능)

에너지절감시설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 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동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지원형태 : 국비(자치단체자본보조) 25%, 지방비 30%, 융자 25%, 자부담 20%
 - * 컨설팅 : 국비(민간경상보조) 10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사업 1차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융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융자를 실행하여 보전 가능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내에 융자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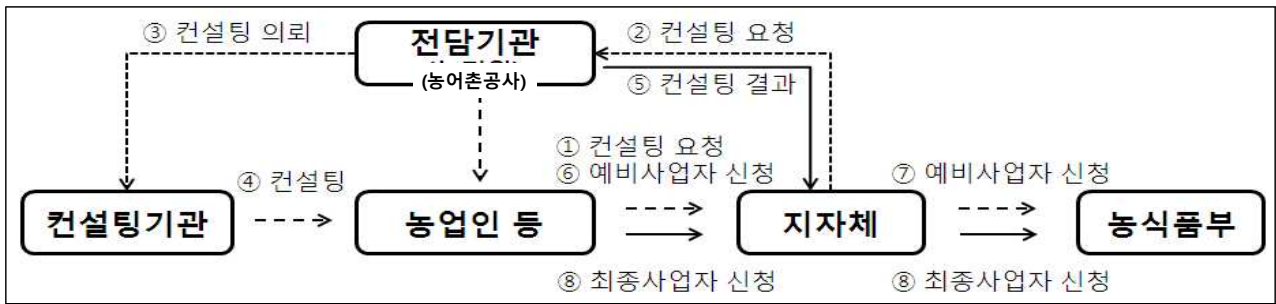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설보급) 시·군·구, (컨설팅)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지방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 원/m ²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 원/m ²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알루미늄스크린 11천 원/m ²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에어로겔보온커튼 14천 원/m ²	○ 에어로겔 부직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 원/m ²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 원/m ²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m²)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m²)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스마트팜 장비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이고, 시설원예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진행 가능)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계획(지침) 통보(전년도 1월),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6월)
-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구에 사업계획(지침) 통보(전년도 1월),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6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구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10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9~12월)

시·군·구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신청 공고·접수(~전년도 7월)
 - * 30일 이상 공고 및 15일 이상 접수(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단축 가능)
 -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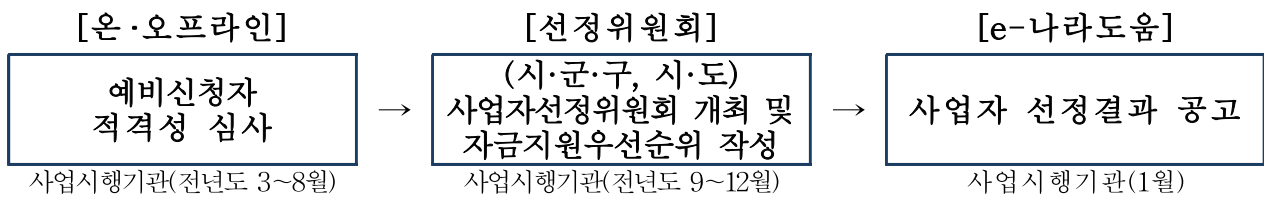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시 사업 신청자의 사업요건 충족 여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해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이전 지원 실적 등을 통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원가계산서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
 -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원가계산서를 통한 사업비 적정여부 확인 절차 생략 가능
 -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아 사용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총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하며,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10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전년도 7~8월, 시·군·구별 공고 일정에 따름)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첨부
 - *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이차보전)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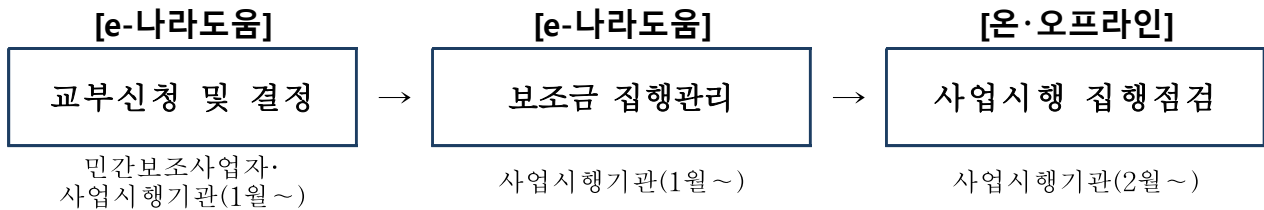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구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구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참조)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구

- 시·도지사는 시·군·구 및 사업자별 연간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 일정(연간 사업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2월)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국고보조금 및 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군·구청장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참조)

자금집행

시·도,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등 발급 여부 확인(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확인)
- 시·군·구청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

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군·구청장은 원활한 정책자금(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용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용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정책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용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용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구에 사업비(국비, 융자(이차보전),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융자(이차보전) 대출 신청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이후 융자 실행추진 계속 가능)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신청

<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구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구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군·구청장은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군·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 시·군·구청장은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군·구청장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 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군·구청장은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군·구청장(또는 사업대상자)은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구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구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이월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전 집행된 보조금과 융자금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2항에 따라 집행된 보조금과 이자액을 회수하고, 융자는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구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 포기 전 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요구에 따라 반납
-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12월 15일 까지 시·군·구에 이월 신청서 제출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구

[공통사항]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추진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준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 보급 유도(별첨 3)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장비·설비와 그 장비·설비가 설치된 온실 등 재배시설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지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공통사항]

- 시·군·구청장은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 배제

-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을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구)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 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 해 시·도(시·군·구)별 예산 배정 시 반영

1. 2027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6.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6.3월) → 사전컨설팅(∼'26.7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6.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6.12월∼'27.1월) → 사업추진('27.1월∼)

2. 202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장소 : 시·군·구
- * 시·군·구청장은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선별된 명단 제출
- 신청기간 : '26. 7~8월경(지자체별 별도 정함*)
- * 시·군·구별로 지침에 따라 공고·접수하며, 시·도는 소관 시·군·구 예비사업자 명단을 취합하여 8.31.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함
- 신청자격 : '26년도 지침 참고(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6년도 사업 내용 참조
- ※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대상자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대상 온실 의 시설 현황	생산 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수직농장	
			㎡		㎡		㎡		㎡		㎡		㎡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 시설	난방 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 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구분				신청시설				신청면적			
			☐ ICT시설				☐ 스마트팜ICT장비 (☐ 현대화장비 동시 추진) (☐ 에너지절감 동시 추진)				㎡			
			☐ 시설원예현대화				☐ 시설원예현대화장비 ☐ 화훼류신수출장비				㎡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기타()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사업비 적정성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조회 ☐ 기타() ☐ 미 실시 (해당 내용에 ☒ 표시)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별지 제3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4) 1부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사업자(개인·단체)명			대 표자명		
주 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 반전 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 품목		
단지규모	m ²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규모	m ²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 '23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재배면적(m ²)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시군	사업명	농가수	재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내역	사업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계						m ² , 식, 대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일반), 시설원예현대화(화훼류신수출), ICT장비, 에너지절감장비

나. 세부내역(장비종류)

- 시설원예현대화(일반)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 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시설원예현대화(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장비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2쪽에 계속)

나. 세부계획

사업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				
-				
-				
○				
-				
○				
-				
○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m ²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 확인원<담보 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불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 구분	☐ ICT시설, ☐ 시설원예현대화(☐ 일반, ☐ 화훼류신수출) ☐ 에너지절감장비 (해당유형 ☒ 표시)				
	대상자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단위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배품목	사업구분	세부내역	사업량	사업진도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공정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m ²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가.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일반), 시설원예현대화(화훼류신수출), ICT장비, 에너지절감장비

나. 세부내역

- 시설원예현대화(일반)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시설원예현대화(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장비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 ~~산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난방기~~

다.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라.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사업포기 · 이월 사업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회계 연도	시도 명	시군 명	사업 자명	생년 월일	사업 명	하위 사업 명	사업비					포기·이월 사유
								계	국고	융자	지방 비	자부 담	

주1) 작성요령(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가. “구분”: 포기, 이월 구분 기재

나. “사업명”: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

다. “하위사업” : 사업별로 하위사업 작성

- 시설보급 : 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 온실신축 : 신축, 개축
- 신재생에너지 : 지열(신), 지열(개), 폐열(신), 폐열(개), 목재펠릿, 공기열(물), 공기열(공기)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사업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현황

연번	사업자 현황			사업 현황							제재 시작 ⁴⁾	제재 종료 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재 사유 ¹⁾	사업 명 ²⁾	포기 (이월) 사업연도	포기 (이월) 사업명	포기 (이월) 사유	제재 여부	제재 예외 사유 ³⁾		

※ 작성요령(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엑셀로 작성 관리)

1) 포기 또는 이월로 기재

2)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 중 택1

3) 아래 1부터 6까지 사유 중 택1하여 해당 숫자 기재(단, 6번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기)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포기)사업 포기일, (이월) 준공일

5) (포기) 포기일 이후 3년이 되는 날, (이월) 준공일 이후 2년이 되는 날

[별첨 1] 사업자 선정 기준표(예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자 선정기준표

-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노후 온실 개보수와 동시 추진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생산·유통조직 참여 경영체 (여/부)

시군	사업 신청자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	합계 (100점)
		온실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 가점조건(중복 적용 가능)

-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점
-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점
-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점
-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사용(5점): ()점
-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5점): ()점

☐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미충족 ()	대상 () / 미대상 ()

< 평가 참고사항 >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구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온실조건: 온실의 종류, 규모화, 작목,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온실내 자동화 정도,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시설 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발급번호 제 호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m²)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 C+D))		자부담(B)		보조금(C)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 G+ H+ 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 \times 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times J) - (F +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times J) - (B + G + K)$)	
천원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80 cm ↓
← 110cm →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21 cm ↓
← 30cm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첨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시설원에 분야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설원에 분야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시설원에 분야 사업 대상자 선정	준영구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협중앙회	시설원에 분야 사업 업무 추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1년 (목적달성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